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이혼하면 배우자 교통사고 보상액은 분배되나

〈문〉 저는 40대의 남성으로 7년전 심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 평생 신체 일부가 마비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상당량의 피해 보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집을 완불해서 샀으며 제가 활동하기 편하게 약간 개조도 했습니다. 현재 이혼이 진행중인데, 아내는 그 집의 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요구합니다. 아내는 대학 졸업자로 현재 은행원이며 저는 신체 불구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이 집의 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따르면, 결혼기간에 배우자가 사고로 인해 받은 상해 보상액은 결혼이 지속되는 한, 일단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혼, 혹은 별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결혼기간 사고로 인해 받은 상해 보상액은 재산 분배시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의 부부 공동재산의 동등한 분배의 원칙에서 벗어나 법원이

그 분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특별법에 의해 그 분배가 결정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상해 보상액은 상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전액수가 주어지나, 만약 그러한 분배가 나머지 배우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상해 보상액의 분배를 공정성에 기준하여 재분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상해 보상액의 50%는 상해를 입은 배우자가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해 보상액의 전부가 집을 일시불로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집은 귀하의 신체 장애에 맞게 개조되었으며, 귀하가 평생 신체 불구의 상태로 남게 된다는 진단과, 그 반면에 아내는 학벌과 직장 경력을 갖추고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항들을 모두 감안할 때, 법원은 집의 100%에 해당하는 권리를 귀하에게 분배하리라고 사려됩니다.

문 전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가져가 손님을 빼어 갔는데

〈문〉 저는 각종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의 회사에서 일해 왔던 직원이 두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는 본인의 보험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이후, 저의 회사의 오랜 고객들이 자꾸 그 직원이 새로 차린 보험회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회사 다른 직원의 말로는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 고객 명단을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첫째, 귀하는 그 직원을 채용하였을 당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체결된 채용 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특히 보험회사의 채용 계약서에는 에이전트가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에이전트가 회사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업종으로 회사와 그 고객 사이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쟁을 금

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째, 만약 채용 계약서에 경쟁 금지 조항이 명백히 들어있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그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고객 명단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과 그 내용의 사용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운영에 있어 그 회사가 확보한 고객의 명단은 그 회사가 자체 내에서 생성한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귀중한 기업 비밀(Valuable Trade Secrets)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귀하의 고객 명단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 그 내용을 자신의 사업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은 남의 기업 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며 채용 계약서의 경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라 사려됩니다.

문 자녀양육 관련 Wage Assignment Order란

〈문〉 1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5세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500달러를 내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전 남편이 재혼을 한 이래로 양육비를 보내오는 날짜가 매우 불규칙해지고 그 액수가 자꾸 밀려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미국 직장을 다니며 한 달에 두번 월급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는 자녀 양육비를 전 남편이 보내줄 때까지 매달 기다리는 대신, 현재 자녀 양육비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전 남편의 고용주가 매번 월급을 지

불할 때마다 전 남편의 월급에서 자녀 양육비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귀하 앞으로 직접 수표를 발급하여 보내줄 것을 법원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은 밀린 자녀 양육비와 미래의 양육비에 대하여 전 남편의 고용주에게 전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따로 할당하여 귀하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Wage Assignment Order)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명령은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전 남편의 고용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반드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낯동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 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e. LA, CA90010